

한국계 Maquiladora 를 위한 Executive Summary¹

November 21, 2008

2008 년중 멕시코 세법변경 및 2009 년 전망

지난 1 월 1 일부로 단일세율 법인세(IETU)를 실시한 이래 마킬라도라에 대한 Safe Harbor 3% 감면안 연장과 또 그에 상응하는 IETU 특별감면조치가 실시된 이외에는 사소한 변경등이 있었을 뿐 입니다. 또한 2009 년에는 중요한 세법개정 및 변경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. 아래는 금년중 변경된 내용중 마킬라도라에 해당되는 부분을 정리한 것입니다.

(1) 3% 감면안 연장

- 2003 년 10 월 대통령령에 의하여 임시로 도입 되었던 Safe Harbor 3% 감면안 (2004 년 5 월 29 일자 News letter 참조)이 연장되었다.

(2) IETU 마킬라도라 크레딧 도입

- IETU 도입으로 마킬라도라의 세금부담이 증가된 부분을 상쇄하기 위한 크레딧을 신설하였다.
- 크레딧 신설에도 불구하고 2-3%의 실효 세율(effective tax rate)이 증가하였다. 지난해 평균 실효세율은 위에 언급한 3%감면후 평균 12-14%이었다.

(3) 세무감사 벌과금 규정 변경

- 세무감사 도중 미납세금이 발견되었지만 미납세금 고지전 자진해서 정정하는 경우: 40% 벌과금
- 세무감사중 미납세금에 대한 고지를 받았지만 감사가 끝나기전에 정정하는 경우: 50% 벌과금
- 그 이외의 경우: 75%

(4) 사회보장국 (IMSS)에 종업원 등록해지 조건 완화

- 종전 IMSS IDSE 시스템을 통하여 종업원등록을 해지하는 조건은 termination agreement 가 있거나 자진해서 사직하는 경우 등 제한적이었지만 종업원이 연속해서 8 일이상 결근하는 경우는 등록해지가 허용된다.

관세(Custom) 규정

- 임시수입한 물건이 도난이나 분실로 인해 없어졌을 경우 영구수입으로 전환하는 기한이 15 일에서 30 일로 연장되었다.
- 임시수입된 모든 자산은 (serial number 등으로) 개별 확인이 가능해야 한다.

¹ 본 Summary 는 Choi, Kim & Park, LLP (CKP 회계법인)이 한국계 마킬라도라 운영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한 것이며 이는 저희의 법률적인 해석이거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니므로 중대한 의사 결정 시에는 각자 전문가의 적절한 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.

Choi, Kim & Park, LLP
Executive Summary for Korean Maquiladoras
November 21, 2008

- 내수 판매나 scrap 판매는 반드시 관세규정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.
- 2006년 11월 Maquiladora 와 PITEX 가 “IMMEX” 프로그램으로 통합되었을 때 예고되었지만 최근 관세당국의 조사가 강화되고 벌금 또한 천문학적 단위로 부과되는 사례가 있었다.
 - Import & Export Maquiladora 사례: Annex IV 또는 Annex 24 운용 미비 및 Perimento 정리소홀/기계장비 serial number 불일치- 벌과금 70 million pesos
 - Service Maquiladora 사례: 사급품에 대한 입출금 내역 신고 (consolidated perimento) 미이행/ Service Maquiladora 가 보유하고 있는 사급품에 대하여 perimento 사본을 보유해야하는 규정 미이행/기계장비 serial number 확인불가 - 벌과금 140 million pesos.

IMMEX (Maquiladora program 의 새 이름) 규정

2006년 11월 IMMEX 프로그램이 발효된 이래 약 2년동안 322개의 마킬라도라 프로그램이 취소되는 등 규정이행에 대한 정부당국 감독이 엄정하여 대강의 규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.

- Hacienda 와 SECON (과거 ‘SECOFF’)이 서로 자료를 전자방식으로 공유할 뿐만 아니라 연합하여 조사할 수 있는 규정 신설
- IMMEX program 신규신청시 처리기간 : 15 영업일 이내
- IMMEX program 연장 및 변경신청시 처리기간: 10 영업일 이내
- 프로그램을 유지하기 위하여 연간 미화 50 만불 이상을 수출하거나 총 매출액의 10% 이상을 수출해야 한다 (이규정은 NAFTA 에 위배됨)
- 프로그램 이행을 조사하기 위하여 Hacienda 나 SECON 은 어떤 자료도 요구할 수 있다. (종전에는 제한이 있었음)
- 임시수입물품의 흐름을 관리하기 위한 재고통제시스템을 반드시 운용해야 하는데 종전 Annex 24 에 의한 규정에서 다소 간소화된 Annex IV 을 운용할 수 있다. 이 규정을 어길 경우 프로그램이 취소될 수 있다.
- 프로그램 정지 (suspension):
 - 5월 31일 기한의 연간보고서 미제출
 - 납세자번호/세무상 주소/공장이 불확실하거나 휴면상태일때
 - 정지는 매년 6월 1일부로 시작되며 정지사유가 8월 31일까지 정정되지 않으면 프로그램이 취소된다.
- 프로그램 취소 (cancellation)
 - 최소 되면 모든 영업활동이 중지되며 60일이내로 모든 임시수입자산을 국외로 반출해야 한다.
 - 세법을 포함한 법규위반이 반복되어 적발될 경우 (대략 20회 이상)
 - Perimento 나 Factura 에 기재되어 있는 국외소재 거래처가 가공이거나 존재하지 않을 경우
 - 12개월이상 수출(foreign trade operation)이 없을 경우
 - 회계장부나 증빙서류등을 유지 보관하지 않는 경우 (최소 5년이상)
- 프로그램 신청이나 변경시 상품분류(HS) 번호는 원자재등 물품에만 요구되며 기계장비는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.
- Service Maquiladora program 은 종전대로 유지된다.

Choi, Kim & Park, LLP
Executive Summary for Korean Maquiladoras
November 21, 2008

- 부가세(IVA tax) 환급은 Certified company 는 5 영업일 그 이외에는 20 영업일 이내에 처리한다.

기타

- 각종 보고서 제출기일
 - Corporate financial statements: 4 월 30 일
 - Notice of foreign stockholders: 3 월 31 일
 - Economic annual report (questionnaire): 회사 이름 첫 initial 에 따라
 - A-D 4 월 30 일
 - E-J 5 월 31 일
 - K-P 6 월 30 일
 - Q-Z 7 월 31 일
 - National statistics report: 매월 17 일
 - Annual report of foreign commerce operation: 5 월 31 일
 - Municipal operations license: 3 월 31 일
 - Annual Maquila report: 9 월 30 일
- 600,000 페소이상의 대부금이나 자본금을 받았을 경우 15 일이내로 신고하지 않으면 전액과세소득으로 간주될 뿐만 아니라 보고 미이행에 따른 벌과금이 부과된다. (2007 년 10 월 25 일자 News letter 참조) 그러므로 마킬라도라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송금하는 경우 이외에 건설자금등을 지원하기 위한 자본금 또는 본지사대여금을 송금하는 경우에는 보고기한을 준수하도록 주의해야 한다.

본 Executive Summary 는 1996 년부터 수시로 작성 배포 되었으며 지난 Summary 가 필요하거나 본 Summary 에 의문이 있으시면 저희 Choi, Kim & Park (CKP) 회계법인 (전화 (858)560-5200 이나 Email: hoonkim@ckpcpas.com 으로 알려 주십시오. 끝.